

# 梁濟海 謀變과 相贊契\*

박찬식\*\*

1. 머리말
2. 金益剛과 「相贊契始末」의 작성
3. 相贊契를 둘러싼 鄉戰
4. 맺음말

## 국문요약

이 글은 「相贊契始末」을 통해 梁濟海 謀變의 실상을 재조명하고, 19세기 초 鄉權의 동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상찬계시말」은 양제해 모변으로 흑산도에 유배가 있던 김익강이 진술한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 이 자료에는 정부측 기록과는 다른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나 있다. 첫째, 상찬계가 행한 각종 폐단이 사건의 중요 원인이었다. 둘째, 양제해의 신상, 거사 추진 과정, 告變의 실상, 양제해에 대한 평가 등이 기록되었다. 양제해의 죽음은 상찬계가 행한 의도적인 타살로 보고 있다. 셋째, 이 사건을 상찬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等訴 운동으로 보고 있다. 넷째, 이도철·김재검·김상빈 등 정부측 기록에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기록되었다. 특히 김재검은 상찬계의 핵심 인물로서, 양제해의 거사를 반란으로 조작하였다.

상찬계는 1790년경에 제주도의 鎭撫吏·鄉吏·假吏 등 이서층 300명을 결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3-074-AM0010).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속하여 만든 이권 조직이었다. 상찬계는 제주목사와 결탁하여 세금 징수, 상거래, 관직 임명 등에 개입하여 뇌물을 챙기는 등 온갖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다. 결국 양제해 등의 거사는 변란·반란보다는 민란 또는 향전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제주도의 鄕戰이 향리·향임층 내부의 복합적인 싸움으로 전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梁濟海 謀變, 金益剛, 金載儉, 相贊契, 相贊契始末, 鄕戰, 반란, 鄕吏, 鄕任

## 1. 머리말

한국사에서 19세기는 민란·변란 등 민중들의 저항운동이 활발했던 시대이다. 특히 1811년 평안도 홍경래의 난은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변란이면서 서북지역 내 향권의 동향, 지역민의 정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sup>1)</sup> 홍경래란은 한 지역의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바다 건너 제주에서는 홍경래란을 토벌하기 위해 倡義兵으로 나서겠다는 유생 집단이 있었다.<sup>2)</sup> 한편으로는 홍경래란에 고무되어 지역 향권 구도의 재편을 꾀하며 거사를 시도한 소위 ‘양제해 모변’이 일어났다.

양제해 모변에 대해서는 이미 권인혁 교수가 19세기 제주 민란의 실상과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주목하여 검토한 바 있었다.<sup>3)</sup> 이 연구는 金守基 제주목사와 李在秀 察理使가 정부

1) 吳洙彰,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 一潮閣, 2002;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2) 대정현의 幼學 姜尙勛·梁渭慶·高漢日·朴弼基·宋益河, 通德郎 具濟國 등이 제주·대정·정의 삼읍 각리 사람들 앞으로 보낸 檄書(1812년 3월 10일).

3) 權仁赫,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7, 1988.

에 올린 장계 내용이 수록된 『日省錄』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 논문을 통해 양제해 모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모변의 동기와 전개 양상, 모변의 주체와 그 역사적 성격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그 결과 양제해 모변은 당시 제기되고 있었던 지방 인사의 부조리와 수취체제의 문란을 배경으로 하면서 중앙에서 파견된 네 지방관(제주목사, 제주판관, 정의현감, 대정현감)과 奸惡 吏校들의 제거를 통해 고립적 성격의 別國을 건설코자 한 시도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 모변 세력이 구상한 별국 건설은 현 모순을 타파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만을 목표로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큰 의문점 하나를 가졌는데, 명쾌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움으로 남은 바 있었다. 즉, 김수기 제주목사의 장계에는 보이지 않았던 ‘相贊契’라는 조직이 왜 이재수 찰리사의 보고에는 나타나는지, 이 조직의 실체는 무엇이기에 이재수의 民邑弊廢에 관한 別單 내용 중에서 맨 처음 언급되었는지, 상찬계를 둘러싼 모변의 실상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였다. 권인혁 교수는 상찬계를 도내 권력과 관계된 官人輩들의 作契가 아닌지 추정한 바 있으나,<sup>4)</sup> 상세한 설명은 생략했었다.

그런데 필자는 최근 이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남도 黑山島에 유배 갔던 金益剛이 상찬계의 실상을 진술한 자료가 정약용의 강진 유배 때 그 제자 李綱會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강희의 『耽羅職方說』 안에 1권으로 편성된 『相贊契始末』이 그것인데, 이 자료를 통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sup>5)</sup> 필자는 『日省錄』 등 정부추자

4) 위 논문, 138쪽, 각주 42).

5) 필자는 원 자료의 사본을 동굴소리연구회 현행복 회장으로부터 입수하게 되었다. 현회장은 최근 『탐라지방설』의 완역을 끝내고 출간을 앞두고 있다. 많은 독자들의

료와 『상찬계시말』과의 대조 작업을 꼼꼼하게 시도하여 보았다. 본고는 그 작업 결과를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탐라지방설』과 『상찬계시말』의 존재는 최근 몇몇 학자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이강희의 저술로서 주목한 글<sup>6)</sup>과 제주도 향리층의 동향과 관련하여 소개한 글<sup>7)</sup>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글들은 『상찬계시말』의 전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상찬계의 실상을 진술한 김익강에 초점을 두어 『상찬계시말』이 작성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과 관련 인물들을 중심으로 『상찬계시말』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상찬계를 둘러싼 鄕戰의 모습을 양제해 모변과 연관시켜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본고는 『상찬계시말』의 분석을 통해 양제해 모변의 실상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전개된 鄕權의 동향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19세기 제주지역 이서층과 향임층에 대해서는 호적 자료를 중심으로 직역 분포, 호구 변동, 혼인 양상 등을 검토하거나, 수령 교체에 따른 폐단과 관련하여 살펴본 성과가 있었다.<sup>8)</sup> 그러

일독을 권하며,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6) 林煥澤, 「茶山學團에서 海洋으로 學知의 열림 -李綱會의 경우-, 『大東文化研究』 56, 2006 ; 김경옥,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담을 통해 본 선박건조술, 『역사민속학』 24, 2007.

7) 權奇重, 「19세기 濟州 鄕吏層의 戶口 變動 -大靜縣 東城里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57,

8) 權仁赫,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李元淳教授華甲記念 史學論叢』, 1986 ; 조성윤,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 구조,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27, 1991 ; 金東柱, 「朝鮮後期 濟州 大靜縣 鄕吏層의 身分變動, 『史學志』 28, 1995 ; 李成妊, 「19세기 제주 大靜縣 邑治 거주민의 혼인양상 -『大靜縣衙中日記』와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57, 2007. ; 權奇重, 위의 글.

나 양제해 모변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서충과 향임충의 대립·갈등 구도 등을 드러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본고가 갖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金益剛과 「相贊契始末」의 작성

「상찬계시말」이 수록된 『耽羅職方說』은 茶山 丁若鏞의 강진 유배 때 그 제자인 李綱會(1789~?)의 저술이다. 이 글의 제1권은 제목 그대로 제주도 지리에 관한 내용이고, 제2권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찬계시말」로 구성되어 있다. 이강회가 흑산도에서 만난 제주도 사람 金益剛으로부터 들은 제주도의 지리와 실태, 정치사회적 사건을 정리한 글이다.

「상찬계시말」은 순조 13년(1813) 12월 제주목사 金守基가 보고한 ‘양제해 모변’의 전말을 기록한 글이다. 이강회는 이 사건으로 ‘무기한 절도 유배(絶島勿限年定配)’ 형벌에 처해져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김익강으로부터 그 실상을 전해 들어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강회는 원래 牛耳島에 文淳得(天初, 1777~1849)을 만나러 갔다가, 김익강이 흑산도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찾아가서 직접 만났다.<sup>9)</sup> 茶山學團<sup>10)</sup>의 주요 성원인 이강회가 우이도를 찾아간 것은 巽庵 丁若銓이 우이도에서

9) 吾聞之文天初 巽菴丁公謫在黑山 見益剛 奇之大託心契云 故吾又延見(「相贊契始末」, 金益剛傳).

10) 다산의 강진 유배시절에 형성된 제자 집단을 말한다. 「茶神契節目」에 나와 있는 제자 18명이 대표적이다. 다산의 아들 丁學淵·丁學游를 필두로 黃裳·李時憲·李綱會·李淸·李時升 등과 승려 惠藏, 尹鍾璧·尹廷琦 등 외가 임척 등이 망라되어 있다(林煥澤, 「丁若鏞의 康津 流配時의 教育활동과 그 성과」, 『韓國漢文學研究』 21, 1998).

생을 마친 3년 후이며, 정약용이 해배되어 강진을 떠난 직후인 1818년 10월경이었다.<sup>11)</sup> 그러므로 李在秀 찰리사가 제주에 파견되어 양제해 모변을 처리한 1814년 윤2월로부터 4년여 지나서 이강희와 김익강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양제해 모변 당시 김익강의 나이는 61세였다. 김익강의 본관은 김해이고, 제주도 入島祖는 仁祖反正 후 광해군을 받든 죄로 제주도 유배형에 처해진 金膺珠이다.<sup>12)</sup> 김응주는 유배 생활이 해제된 다음에도 제주에 정착하여 살게 되어, 후손들은 김익강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을 거치는 동안 제주도 내에서 유력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sup>13)</sup> 김익강은 제주 목에서 鄉監(別監)을 다섯 번 역임하고, 한 번 鄉首(座首)직에 올랐던 유력 鄉官(鄉任)이었다.<sup>14)</sup> 주민들이 추대하여 그를 존경했고, 官府 안

11) 林熒澤, 앞의 논문, 87쪽.

12) 『相贊契始末』, 金益剛傳에는 “金益剛者 本金官之裔也 其先當癸亥(仁祖反正: 역자 주)之後 奉昏朝 入海仍居焉”이라고 기록되었다.

13) 김응주와 같은 항렬의 친족인 金完의 아들 金汝水가 인조 26년(1649)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왔을 때, 함덕촌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김응주를 찾아가 위로하고 배후에서 도왔다고 한다. 제주도의 김해김씨 가문에서는 김응주를 四君派의 입도조로 여기고 있다(金奉鉉, 『濟州島流人傳』, 國書刊行會, 1981, 143~144쪽).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보건대, 김응주의 후손들은 어렵지 않게 제주도 내에서 유력가문으로 성장하여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14) 『相贊契始末』, 金益剛傳에는 “제주의 규정에 따르면, 향관(향임)은 매우 깨끗하고 참된 사람 중에서 선택하고, 외가와 처가가 모두 향임이어야 하며, 아울러 위엄과 덕망이 있어야 했다. 나라의 흥문관 관리가 되는 것에 비길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됨의 그릇이 매우 크고 빛나는 것이다. (김익강은) 남쪽 고을(제주)의 관리가 되었는데, (관청에서) 시종드는 사람, 壯丁을 가지고 쉼을 부리는 관리(군역·부역을 담당하는 향리), 곡식을 교환하는 자들(稅吏)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김)익강은 향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때문에 다섯 번이나 鄉監(別監)을 역임했고, 한 번은 鄉首(座首)를 지냈다. 주민들이 추대하여 그를 사랑했고, 官府 안에서도 청렴하다고 칭찬했으며, 契隊 또한 (그를) 두려워하고 꺼렸다.”고 하였다.

에서도 청렴하다고 칭찬했으며, 契隊(상찬계) 또한 그를 두려워하고 꺼렸다.

김익강의 딸이 양제해의 처였기 때문에 김익강과 양제해는 친사돈의 관계에 있었다. 때문에 양제해가 모변 과정에서 김익강을 주모자로 추대했고, 변란이 성사되면 그를 대정현감(정의현감으로 나온 기록도 있음)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sup>15)</sup> 제주목사 김수기의 장계에 수록된 김익강의 供招<sup>16)</sup>에 의하면,

그(김익강)와 양제해는 결혼을 통해 맺어져 정이 긴밀하다. 작년(1812) 2월에 그가 양제해 집에 간 즉 제해가 말하길, ‘지금 西變(홍경래의 난)이 크게 일어났다고 한다. 나는 육지로 나아가 적에 투신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듣기에 매우 놀랍고 두려워서 말로 질책하고 그만두게 하였다. 또 작년 5월에 양제해를 방문한 즉 제해가 말하길, ‘이번 신구 관리(향리·향입)들이 교체되는 때에 내가 병사를 모집하여 州城을 취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그는 또한 질책하고 자리를 떠버렸다. 올해 9월 15일에 제해를 白把摠의 집에서 봉착하였는데, 제해가 말하길, ‘우리들의 대사는 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고덕호로 하여금 20명을 모군케 하고 고원창으로 하여금 50명을 모군케 하고, 강필방으로 하여금 20명을 모군케 한다. 내 妾男 형제인 전필복·양인복 등이 또한 모군하여 거사를 하기에 족하니, 장인께서도 동참하시오’라고 하니, 그는 또한 크게 질책하고 귀가한 뒤 병을 얻어 누워 있었다.

고 하였다. 즉, 양제해는 장인 김익강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거사 계획을 의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통해서 거사 추진과 관련된 몇

15) 金益剛 則以出於各人等招者 而觀之濟海 每以益剛稱主謀 或謂之人器之無出其右 或謂之俠氣之足可勇斷 至有事成後 分掌旌義之說(『日省錄』 純祖 14년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 李在秀 以罪囚等 分輕重 酌處馳啓).

16) 『日省錄』 純祖 13년(1813) 12월 3일, 金益剛問目.

가지 배경을 알 수 있다. 첫째,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둘째, 신구 향리·향임의 교체 시기를 이용해서 제주지방의 관권 및 향권을 장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셋째, 병력을 규합하여 무력적인 방법으로 제주성을 공략하여 제주지역의 정치사회질서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제해의 의욕에 대해 김익강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익강은 2차 공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7)</sup>

그와 양제해는 친사돈 관계이다. 흉악한 모의를 주장하고 여러 차례 찾아간 것이 명백함은 모두 이전 공초에서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번 옥사의 정황을 차례로 알아보면, 양제해는 耽羅 一島를 가리켜 梁氏의 옛 터라 가리키면서 스스로 (자신을) 옛 叛敵 金通精에 대비하였다. 처음 요사한 김익강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시끄러이 반역의 범죄를 가장 먼저 모의하였다. 이어서 고종사촌 金昌瑞와 통하여 같은 마음으로 화답하여 응해서 甲子·甲申으로 거병일을 택함으로써 기어코 미친개나 눈먼 말이 환난을 앞에 둔 것을 알고 있었음은 傳札이나 眞贓을 통해 스스로 드러났다. 이에 숙부 梁廷燁, 近族 梁仁福, 姻弟 金信剛, 田必祿 등과 더불어 차례로 徒黨을 체결하였는데 실로 이와 같은저. 고인의 모병술을 취하여 무릇 徭役이나 喪葬 때에 契 조직을 만들 것을 주장하여 몰래 같은 무리를 만들었는데, 高德好·姜必方·高元昌 등을 腹心和 瓜牙로 삼았다. 몰래 弟兄子侄로 하여금 매이어 복종하게 하였는데, 高德宗·姜成三·田京祿·金順瑞·金五福·金五傑·金五榮·姜成圭·姜成玉·梁廷贊·高士陸 등이 이들이다. 또한 많은 장정들을 불러 모아 병기를 마련하였고, 빈궁하여 의뢰할 수 없는 자 또는 匠手·下賤輩를 속여서 하루아침에 부귀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유인하거나 위협하였는데, 文彭年·高成太·姜先貴·高尚得·白仁好 등이 이들이다. 관아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경우에는 牧校 李愛昌, 營吏

17) 『日省錄』純祖 13년(1813) 12월 10일, 濟州牧使 金守基 以謀變罪人梁濟海及干連諸人 推覈馳啓, 金益剛 更推問目.

梁時彦 등이 결탁하여 내용하여 관가의 동정을 주야로 엿보고, 연후에 잘 쓰는 포수로 하여금 정병을 죽여서 불의에 탄환을 발사하여 제주목 관아를 몰래 취하고자 하였는데, 그 정황을 토로함이 역시 참담하다. 그 범죄를 논함에 있어 魁首는 양제해이고 주모는 김익강이므로 당연히 주살해야 할 것이다.

즉, 2차 공초에서 김익강은 양제해가 이 거사를 양씨가 통치했던 탐라국을 복원하기 위해서 계획했으며, 김통정이 주도한 삼별초 반란과 같이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양제해 모변이 별국 건설과 중앙정부에 대한 모반의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거사의 성격을 반란으로 규정해서 강경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김수기 목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부분 양제해의 친족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장인 김익강과 姻弟 김신강, 김익강의 아들들(김오복·김오걸·김오영)이 연루되어 있다. 때문에 친족 가운데 핵심 인물은 김익강이었고, 김수기 목사는 그를 주모자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상찬계시말』에 의하면, 양제해 옥사가 일어났을 때, 향리 모씨가 말하길, “김익강과 양제해는 매우 가까운 姻戚이다. 관청을 두루 돌면서 마음을 같이 한 친족들은 이미 제거하였으나 양제해가 김익강에 대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말하지 않으므로 우리들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제주목 관아에서 김익강에게 형벌로 곤장을 치려 하자, 梃手들이 모두 “김익강을 칠 수 없다”고 하자, 정의현의 정수를 불러들여 치게 하였다. 이러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김익강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였다. 이에 제주목사 김수기는 하는 수 없이 감옥에 가두어 72일 간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키고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옥졸들과 성내 할머니들이 관영의 비장들 모르게 菫[藜]을 느슨하게 하거나 음식을 갖고 와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였다. 李在秀 찰리사가

왕명을 받아 제주로 가는 도정에서 전주에 도착했을 때 죄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에 김익강은 온돌방에서 보호를 받으며 숙박하게 되었고 72일 만에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찰리사가 제주에 도착하자 엄하게 신문하였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양제해와 친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知情罪’라 하여 遠島에 유배를 보내게 되었다.

『상찬계시말』은 위와 같이 양제해 모변에서 주모자로 인지되어 遠島流配刑에 처해진 김익강으로부터 들은 사건의 실상을 이강희가 정리한 글이다. 이강희는 『상찬계시말』의 머리글에서 “이 편은 탐라직방설과는 무관하지만, 제주의 큰 옥사이므로 대략 들은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군자의 올바른 正筆을 기다린다.”고 하여,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탐라직방설』 속에 성격이 다른 당대 사건의 실상이 기록된 것은, 양제해 모변을 통해 제주도의 특수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강희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찬계시말』은 크게 양제해 모변 사건의 개요와 사건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전기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부분에서는 양제해 모변 사건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상찬계의 조직 경위와 폐단, 향리층의 동향,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다음 인물 전기 부분에서는 梁濟海傳, 金益剛傳, 李察理傳 등 잘 알려진 사건 관련자의 전기와 李道喆傳과 같은 미지의 인물 전기가 실려 있다. 이들 전기 내용 중에는 상찬계의 핵심 인물인 金載儉과 金相彬, 전현직 향리·향임들의 신상이나 역할 등이 확인된다. 대체로 기전체 역사 서술 방식을 활용하면서 김익강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먼저 정리하였고, 본문의 중간 중간에 이강희의 생각·사론을 ‘按’의 형식을 빌어서 서술하였다.

「상찬계시말」은 양제해 모변을 기록한 정부측 자료(『日省錄』, 『備邊司謄錄』, 『純祖實錄』 등)에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 원인을 상찬계의 폐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글의 제목에서도 보듯이, 상찬계의 積弊가 동기가 되어 양제해가 거사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측 자료에 비해서 상찬계를 중심으로 한 향리층의 동향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향리·향임층이나 상찬계가 행한 각종 폐단을 자세하게 적시하였다.<sup>18)</sup>

둘째, 양제해와 관련된 실상이 더욱 명확해졌다. 양제해는 김수기 목사의 推薦 과정에서 杖殺되어 버림으로써,<sup>19)</sup> 그와 관련된 주요 사실은 목사 또는 상찬계 지도부에 의해서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측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양제해 관련 신상 및 거사 추진 과정, 告變과 관련한 진상, 양제해에 대한 제주도민의 평가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양제해는 1770년생으로서 1813년 옥사로 죽을 때 나이가 44세였다. 제주목 中面 巨馬村<sup>20)</sup> 출신으로서 제주목의 향감(別監)을 네 번 역임했고, 察訪憲吏<sup>21)</sup>를 두 번 지냈다. 양제해 또한 한때 상찬계에 속했었는데, 다른 계원들이 그를 존경하면서도 경계했다. 1813년 봄에 양제해는 제주목 중면의 헌장(풍헌)직을 맡았다. 반년이 지난 10월 그믐에 중

18) 향리·향임직을 둘러싼 폐단에 대해서는 3장에 정리하여 놓았다.

19) 狀啓以爲 罪人濟海病勢苦劇 十一月十六日物故 檢驗則因杖徑斃的實(『日省錄』 純祖 13년 12월 10일, 濟州牧使 金守基 以罪人濟海等 徑斃馳啓).

20) 현 제주시 아라2동 걸머리 마을.

21) 「相贊契始末」, 梁濟海傳에는 “州法 防憲爲一坊之長 有憲所 憲長居之 大事達府 小事自斷”이라 하여, 잘방헌리는 방헌을 말하며, 헌장은 방헌들의 대표자를 말한다. 헌장은 곧 風憲을 가리킨다.

면의 여러 뿔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모여 그에게 “간악한 향리들로 인한 민폐가 갈수록 심해져 민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헌(양제해)께서 방장이 되었고, 또한 듣건대 사또께서 향리들을 똑똑히 규찰한다고 하니, 事志가 민인들을 위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 방헌께서는 계획을 정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제해는 “간사한 향리들의 소굴은 바로 상찬계로서 이를 타파한 연후에야 백성들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며, 장두로 나설 자를 물색하자, 모든 이들이 오직 양제해만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제해는 “글을 잘 짓는 사람을 구해서 等狀 초안을 가져오면 내가 백성들을 위해 한 번 죽겠다.”고 말을 마치자 그 날 자리가 끝났다. 그러나 어느 날에 등소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尹光宗은 먼저 金載儉에게 가서 양제해 등이 변란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재검은 상찬계의 칼자루를 권핵심 인물로서 양제해에 대해 늘 경계해 오던 차에 이 보고를 들었다. 그는 양제해가 주도하던 등소 계획을 변란을 도모한 사건으로 부풀려서 제주목사에게 보고하였다. 김재검 등은 夜招隊와 800여 명의 향리들을 총동원하여 변란 사실을 밤늦게 목사에게 알렸고, 목사는 포졸들을 양제해의 집으로 출동시켜 양제해를 제주목 관아로 포박하여 왔다.

양제해는 거둬지는 신문에도 謀變 사실을 부인했고, 상찬계 소속인 향리들이 자신들의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더욱 심하게 곤장을 내려쳤다. 양제해는 이는 獄卒에 의해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으나, 다시 잡혀 와서 결국 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상찬계시말』에서는 이러한 양제해의 죽음을 ‘상찬계가 입을 막아버린’ 의도적인 타살이라고 규정하였다.

양제해가 죽은 뒤 제주민들은 그를 자신들을 대신해 죽은 인물로 인

식하였다. 『상찬계시말』에는 탐라 사람들이 “양제해는 금세의 項翫다. 하루에 세 번 한라산을 돌고 매번 한라산 정상에 오를 때마다 몰래 八陣의 법을 익힌다. 집에는 말 300필을 기르고 신기한 총이 수백 자루이며, 弓矢는 집에 산처럼 쌓아놓았다. 금덩이도 창고에 몰래 쌓아놓았다.”고 말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양제해를 항우에 비겨 이야기한 것은 그의 용맹함과 지도력을 존경해 나온 말로 보인다. 또한 양제해가 죽은 뒤 제주도민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겨 신비화하고 있었음도 엿볼 수 있다. 이강희도 “양제해는 자신이 죽고 가족은 망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라고 평가하였다.

셋째, 양제해의 거사를 변란·반란으로 본 것에 대해 그 주모자로 취급된 김익강 자신이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수기 목사의 신문 과정에서 양제해는 상찬계를 타파하기 위해 狀頭로 나선 것이지, 변란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김익강은 김수기 제주목사에 대한 의구심도 표출하였다. 李道喆이 상경하여 상찬계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자 備邊司가 사실 조사를 김수기 제주목사에게 지시했는데, 목사가 상찬계에 현혹되어 이도철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를 씌워버렸다고 적었던 것이다. 상찬계와 목사와의 결탁을 염두에 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제해의 장살, 김익강에 대한 고문, 이도철의 상찬계 공격에 대한 은폐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을 반역도로 규정하기 위한 목사와 상찬계의 의도를 기록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넷째, 이도철·김재검·김상빈과 같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을 둘러싼 중요한 인물에 관련된 사실이 적혀 있다. 특히 김재검은 상찬계의 핵심 인물로서, 모변 사실을 관에 알린 尹光宗의 배후에 있으면서 사건의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자이다. 이도철과 김상

빈은 상찬계에 연루되어 희생된 인물로서, 공식적인 모변 연루자로 정 부측 문서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이들 세 인물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李道喆

이도철은 제주목의 鎭撫使이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강직했으며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慷慨하는 성격이었다. 정조 18년(1794) 甲寅年 대흥년이 들어 사망자가 속출하자 軍丁의 명부가 虛簿가 되어 이를 고치게 되었다. 이때 車興道라는 사람이 世族 가문이었는에도 가난하여 뇌물을 바치지 못해 牧子 직역의 천민 신분으로 강등되어 버렸다. 그 딸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서 자살해서 죽어버렸다.

이도철은 이 원인이 상찬계에 있다고 여겨서 이 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1804년 봄에 직접 상경하여 비변사에 가서 상찬계의 폐단을 아뢰었다. 이에 비변사는 제주목사에게 사실대로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목사 또한 상찬계에 현혹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도철을 무고죄 형률로 다스렸다. 이도철은 1805년, 1806년 계속 비변사에 호소하니, 비변사에서는 “그는 미친놈이다. 세 차례나 稱冤을 하니 어찌된 일인가? 이는 반드시 곡절이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상찬계에서는 후환을 두려워하여 육지에 남아 돌아오지 못한 이도철의 친척들을 금전으로 회유하여 더 이상 상찬계를 비난하지 못하게끔 하였다.

### ② 金載儉

김재검은 양제해 모변 직후인 1816년 당시 副吏房 지위에 있었다.

『상찬계시말』에서 김재검은 상찬계 내에서 가장 간사한 자로 평가되었다. 처음에 양제해 옥사를 일으켰으며, 나중에 이 옥사를 왜곡시킨 자도 김재검이라고 하였다. 김재검은 상찬계의 핵심 인물로서, 양제해 모변을 고변한 윤광중은 그의 심부름꾼이었다. 윤광중이 양제해와 증면의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等訴 계획을 세운 사실을 김재검에게 알렸을 때, 김재검은 “나는 양제해를 잘 안다. 모든 제주 사람 가운데 이 상찬계의 근본을 잘하는 사람은 양제해뿐이다. 우리들은 매번 양제해를 끌어당겨서 상찬계에 들여 넣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때문에 항상 두렵고 근심하였다. 저들이 이미 한편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食言할 사람들이 아니다. 비록 죽음을 각오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들은 모두 그의 손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상찬계에 소속된 향리들과 夜招隊를 급히 소집하여 양제해 일당의 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sup>22)</sup>

### ③ 金相彬

김상빈은 김재검의 이종사촌이다. 1816년 副吏房이던 김재검은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면 이방이 될 차례였다.<sup>23)</sup> 그러나 예전 목사가 김재검

22) 상찬계의 핵심인 김재검과 관련된 내용은 金錫翼의 『耽羅紀年』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史氏 가로되, 濟海의 옥사를 사람들이 모두 尹光宗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지만 金載儉의 주장이었음을 알지 못함은 어찌 함인가. 島人이 시비에 어둡고 겨우 수십 년을 지내고 이목이 미치지 못하는 바 되면 곧 賢愚邪正을 거의 알지 못하니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그 옥사가 이루어짐에 光宗은 공으로 명월만호를 상 받아 스스로 得計라 하였으나 얼마 안가서 말에서 떨어져 죽었고, 성 옆에 묻으니 성이 무너져 눌러졌다. 載儉은 비록 몸은 죄를 면하였으나 그 자식 및 손자는 마침내 奸謀로 해서 죽었으니 天道가 참람치 아니함이 죽히 후세의 소인들에게 경계가 될 것인가.”

23) 당시 제주도에서는 새 목사가 부임하면 전임 목사 때 부이방을 이방이 되게 하는 延吏(新延吏房) 제도가 관례로 이어져왔다(『相贊契始末』, 李察理傳).

이 이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상찬계에 속하지 않은 김상빈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1818년 봄에 김상빈은 연리가 되어 신규 목사의 교체 의식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이종사촌의 자리를 뺏을 수 없다고 하여 사양하여 행하지 않고 병을 칭하여 누워버렸다. 이에 목사는 엄벌로 곤장을 쳤다. 한편 김재검은 상경하여 신임 목사의 집을 찾아가 이방이 될 수 있도록 청탁하였다.

신임 목사가 完營(전주의 전라도 감영)에 도착했을 때 김상빈이 가서 인사하니 “제주에는 왜 연리가 이리 많은가?”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김상빈은 예전 목사의 송별식에 입회하지 못하였다. 구 목사가 제주를 떠나버리자 김재검은 김상빈을 고소하였고, 신임 목사는 김상빈을 곤장을 쳐서 죽여 버렸다. 김상빈의 처자들은 원통함을 진정하였으나 모두 구속하여 출옥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김상빈의 杖殺은 양제해 모변이 있는 지 4년 뒤 사건으로서, 이때에도 상찬계 조직의 폐단이 청산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3. 相贊契를 둘러싼 鄉戰

양제해 모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수기 제주목사가 올린 장계에는 상찬계의 폐단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제주목사는 양제해 일당의 변란 기도에 주목한 나머지 양제해를 비롯한 주모자급 7명을 자의적으로 신문 과정에서 杖殺하거나 옥사시켜 버리는 등 무리하게 처리하였다. 때문에 그는 이재수 찰리사가 제주에 도입한 뒤 判官 張持大와 더불어 파직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앞서서도 보았듯이, 김익강이 양제해 등의 죽음을 제주목사와 상찬계의 의도적인 타살이라고 인식한 사실과 연관

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재수 찰리사는 부임한 뒤 즉각 사건 관련자들을 재조사하여 모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상찬계를 비롯한 관리들의 폐단으로 지적하였다. 이재수의 장계에 대한 비변사의 조치<sup>24)</sup>에 의하면,

이변의 난을 일으키려 했던 변은 사실 백성들을 학대한 폐단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관리들이 (상찬)계를 만들고 당을 이룬 것이 끝내는 변란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官長에 대해서는 당연히 按廉하여 黜陟하여야 할 것이요, 校吏들 중에 가장 나쁘고 더욱이 앞장서서 그런 짓을 한 자들을 대대적으로 조사 적발하여 폐단의 근원을 철저히 개혁하여야 할 뜻은, 청컨대 모두 찰리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行會하게 하소서.”

라고 하여, 상찬계와 봉당이 변란의 중요 원인이며, 지방관의 출척과 향리들의 개혁을 지적하고 있다. 이재수는 모변 관련자 47명을 수감 조사하였으며, 그 가운데 고덕호와 양일회를 효수형에 처했고, 김익강 등 4명은 ‘絶島勿限年定配’형에, 6명은 ‘島配’형에 처했으며, 10명은 保放, 25명은 석방시켰다.<sup>25)</sup>

이재수는 찰리사의 임무를 마치고 모변의 배경이 되었던 제주도의 邑弊와 民瘼을 개혁할 내용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장계의 別單으로 보고하였다. 별단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 또한 상찬계의 폐단이였다.<sup>26)</sup>

제주 관인배들이 상찬계를 만든 것은 대개 재력으로 座目を 만들려는

24) 『純祖實錄』 純祖 14년 윤2월 14일 ; 『日省錄』 純祖 14년 윤2월 19일.

25) 『日省錄』 純祖 14년 윤2월 19일.

26) 『日省錄』 純祖 14년 4월 8일.

일은 아니다. 반드시 계와 더불어 우리(牢)를 만들어 깨뜨릴 수 없게 하고 자 하는 것이다. 위로는 吏族에서부터 官奴輩에 이르기까지 서로 봉당과 夤緣을 만들어, 좁은 邑外의 품관이 좋은 자리에 진출하려면 이 무리에 좇아서 붙어 있어야 한다. 함께 직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자기에 붙은 자는 끌어당기고 자기와 다른 자는 막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세력을 따라서 진출하고 이익을 받아들여 사귄다. 무릇 모든 관인들의 소임이나 향인들의 직임과 명단이 모두 이 상찬계 속에서 나온다. 심지어 상찬계 외의 사람이 제주가 비록 있다고 하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금번 양제해·고덕호 등의 모변 거사는 극히 凶悖한 일이나, 그 근본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찬계 외의 사람들은 座首나 千摠이 될 수 없는 까닭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재수의 보고에 대해 중앙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비변사가 제주목에 내린 처리 결과는 아래 내용과 같다.<sup>27)</sup>

비변사에서 아뢰어 말하길, 지금 찰리사 이재수의 別單을 보니, 그 하나는 제주의 관인배들이 서로 봉당을 이루어 相贊하는 폐단이 있다. 무릇 모든 직임과 명단은 모두 상찬계에서 나온다. 때문에 금번 양제해 모변은 실로 상찬계 외의 사람은 座首나 千摠이 될 수 없는 게 주요 원인이 되었다. 만약 관장이 된 자가 사사로움을 배척하고 오로지 공정하게 하면 상찬계는 자연 혁파될 것이다. 제주도의 長吏는 특별히 잘 간택해서 차임해야 할 것이다. 무리를 모아 계를 조직하는 것은 본래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다. 하물며 이렇게 당이 같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 타도하여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 버림으로써 제주도민 謀亂의 근본이 되었다. 이후로는 당을 없애고 간사함을 제거하여 차임에는 반드시 공적인 의도로 할 것을 엄하게 제주목사에게 경계하게 할 것이다.

27) 『日省錄』 純祖 14년 5월 28일 ; 『備邊司謄錄』, 純祖 14년 5월 28일

『상찬계시말』에서도 이러한 찰리사나 중앙정부의 인식은 그대로 확인된다. 김익강은 제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상찬계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西州의 多福洞은 즉 탐라 고을의 상찬계”라고 하여, 상찬계 문제로 불거진 양제해 모변을 같은 시기에 일어난 평안도의 홍경래란에 대비하여 이해하였다. 이강희 역시 “상찬계가 백성을 학대함이 無所不至이며 백성을 살리는 게 水火보다 시급한 까닭에 양제해의 等訴 모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 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상찬계는 향리·향임 등 제주도내 향권을 좌우했던 관리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찬조”한다는 의미로 만든 조직이다. 1790년과 1791년 사이에 아전 한 사람이 주창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손에 칼과 붓을 들고 신분은 천하고 역은 힘들어 종신토록 사람들 밑에서 쫓아다다보니 결국 자식에게 전해줄 자산 하나 없게 되었다. 이 어찌 7백리나 되는 큰 고을의 아전이라 하겠는가. 빈곤함이 이와 같은 것인가. 비록 나 혼자만 부자가 되어 무리들과 같지 않다면 부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세 부류의 吏屬(鎭撫吏, 鄉吏, 假吏) 300명을 묶어서 하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힘으로 서로 더불어 찬조하기로 하여 상찬계를 조직하게 되었다. 1791년 또는 1792년 초에 조직되었고, 1794년 이후로부터 1812년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규모가 가장 커졌다. 양제해 모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찬계의 위세는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찬계는 通引·吸唱·房子로부터 軍奴·使令·拏長 및 三班의 將校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여 조직되었다. 智謀가 빼어난 자, 권위를 두루 갖춘 자, 妙奸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하여 상찬계의 칼자루를 쥐게 하였다.

상찬계가 관여했던 부정과 비리는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상찬계시

말]에 의하면, ① 목장전의 경작 허가 ② 미역밭에서 세금(藿稅)을 거두는 것 ③ 山訟·地訟 관여 ④ 군역 부과 ⑤ 牧子の 역 충원 ⑥ 소를 잡아먹거나 말이 죽었을 때 대신 내는 벌금이나 형벌, 술주정 금지 ⑦ 2현·9진의 褒貶 ⑧ 지방관부의 공사 등에 개입된 비리로 정리된다. 민원 처리에 따른 부채, 비리의 송사, 2현·9진의 執頃<sup>28)</sup>, 風憲·約正에 대한 공갈 등은 상찬계가 행한 부정 가운데 기본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은 외래 상인에게 받는 뇌물<sup>29)</sup>과 坊將 임명에 개입하면서 받는 뇌물이었다. 達梁,<sup>30)</sup> 營邸, 京邸에 머무는 神(금전)<sup>31)</sup>이 수만 냥이라고 하였고, 새로이 목사가 내려올 즈음에는 京城, 完營(全州), 達梁에 십만 냥, 백만 냥을 상납하였다. 목사는 부임하기도 전에 京城, 完營, 達梁에 바친 금전에 취하고 현혹되었다. 이로 인해 새 목사는 부임하여 鎭將과 千摠을 멋대로 差任하여 身役을 면제하게 되었다. 吏校로써 船色과 軍監을 차출하는 데에도 많은 뇌물이 바쳐졌다.

이강희는 이러한 상찬계의 비리에 대해 “백성들의 살갓이 다 벗겨지고, 살이 다 말라지고, 피가 다 마르고, 뼈가 다 부수어진다.”고 하여 이를 四盡으로 불렀다. 또한 그는 제주도에 많은 상선들이 들어와서 이익

28) 남의 잘못을 집어내어 트집을 잡음.

29) 이 폐단에 대해서는 『耽羅職方說』 권1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其外來之商亦不敢移泊他洲 其貢額 每船納十五升棉一匹 水手一口收米一斗 烟茶一丈然後始得受出船記 / 其或風惡帆逆徑泊他洲 則洲管防將親來 問情點考關物 報于都船所 自船所命該防將 護送于禾北 收稅受賂然後 始得商焉.”

30)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의 古達島를 말한다. 북평 梨津鎭은 달랑에서 남쪽으로 불과 800여m 떨어진 수군진으로 사실 달랑과 동일지역 포구이다. 조선시대 제주도 말은 이진에서 상륙하였고, 달랑진이 있었던 남창(이진창)은 제주도에 공급할 식량을 선적하는 포구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 제주도를 왕래하는 제주도 삼읍의 수령과 사신은 달랑(古達島)에서 바람을 기다렸다.

31) 『相贊契始末』에서는 “變錢稱神者 濟本無錢 出陸行錢 入海代布 指使如鬼 故通謂之神”이라 하여, 金錢을 神으로 布木을 鬼로, 통들어서 神으로 부르고 있다.

을 남기더니 근래 상찬계가 조직된 이후로 관리들의 사적인 징수가 자행됨에 따라 위축되었다고 하며, 만약 나라에서 수백 척의 배를 만드는 법을 제정하여 여러 배들이 달랑부에 시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하고 私商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면 상찬계가 농간을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찰리사 이재수도 장계를 통해 김수기 제주목사 재임 당시 향리·향임 차임에 따른 뇌물 수수 등 폐단이 양제해 모변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軍官 金命基·金魯榮 등이 進上物을 封發할 때 操縱하는 船隻을 차임함에 뇌물을 받았고, 馬匹이나 旱藿·涼臺 등을 모두 배에 실어서 興販하러 出陸하는 데 여러 번 (뇌물을 요구하며) 귀찮게 괴롭혔다. 김명기는 鄉任을 차임함에 있어 吳廷集을 名人이라 칭하여 미리 포목 1同을 받았으며, 將校 康縵에게 금전 300냥을 받아 明月 萬戶에 차임하고, 出身 金鼎豪에게 포목 1同을 받아 山馬監牧官에 차임하고자 했다.<sup>32)</sup> 김노영은 산마감독관을 차출할 때 金光祿을 명인이라고 하며 먼저 포목 2同 14疋을 받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김정호가 차출되어 버려서 포목을 김광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단지 70필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재수 찰리사는 포목을 전부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고, 김명기와 김노영은 형벌로 징계하였다. 만호 강연과 감독관 김정호는 곤장으로 다스려 모두 파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비리는 제주목사 김수기가 잘못된 것이므로 우선 파출하고 그 죄상은 비변사에서 품처하도록 보고하였다.<sup>33)</sup> 또한 軍校 呂永孫, 鄉所<sup>34)</sup> 鄭元集은 군역 충

32) 제주도의 산마감독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부자 이야기 : 김만일 집안과 산마감독관』, 『제주도사연구』 10, 2001.

33) 『日省錄』 純祖 14년 2월 14일, 濟州察理使 李在秀 狀罷牧使 金守基. 『相贊契始末』, 李察理傳에는 “刑吏金光祖 嚴刑一次 嚴棍十五度 禮禱以明月萬戶銅臭之差 嚴刑一次徵賊 兵禱以山馬監牧銅臭之差 嚴刑一次徵賊”이라고 기록되었다.

원에 농간을 부려 민폐를 불러 일으켰으므로 엄형에 처했다.<sup>35)</sup>

찰리사 이재수는 양제해 모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폐해를 釐正하기 위한 별단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36)</sup>

- 還穀과 餉穀 및 平役庫의 나머지는 일체 防塞하게 하소서.
- 儲穀耗의 대신 지금은 稅穀으로 하고 賑耗는 會錄하게 하소서.
- 목장 중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은 牧子에게 경작하게 하되 절반은 감세하고, 목자의 元料는 甲寅節目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 牧馬의 剪烙은 3년에 한 번씩 하되 馬鬣의 封進은 排年하여 갖추어 쓰도록 하게 하소서.
- 大靜의 목장에서 私土와 相換한 것은 목장으로 환원하고 文券은 불태우게 하소서.
- 진상에 들어가는 鹿皮와 獐皮 이외의 각종 요구들은 일체 엄금하게 하소서.
- 船稅는 上船을 5냥으로 하여 차례로 遞減하는 것을 정식으로 시행하소서.
- 馬商의 稅木은 매 필마다 10척으로 세금을 균일하게 하소서.
- 세 고을의 藿稅는 아울러 減摠하고 勒買는 금하소서.

이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폐단이 아니라 상찬계의 향리·향임들이 개입된 사안들이 대부분이며, 제주목사와도 결탁되었던 것들이다. 따라서 이재수 찰리사의 별단 내용은 수령과 상찬계의 결탁에 의한 폐단을 시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星湖 李瀾이 ‘수령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좌수와 별감이 있는데, 이를 일러 鄉所라 한다’고 하였다.”(『牧民心書』 吏典六條, 用人).

35) 『相贊契始末』, 李察理傳.

36) 『純祖實錄』 純祖 14년 4월 8일. 이 별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權仁赫의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는 결국 양제해 등의 거사가 變亂·叛亂으로 보기보다는 救弊의 명분을 강하게 내세운 民亂 또는 鄉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인다.<sup>37)</sup> 김재검을 비롯한 상찬계와 양제해 등의 싸움은 향권을 둘러싼 집권세력과 실권세력 간 향전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또한 제주지역 내에서 정치·사회·경제적 폐단을 일삼고 있던 상찬계를 타파하기 위한 등소운동에서, 더 나아가 상찬계와 결탁한 제주목사의 통치에 대한 부정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민란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 물론 김수기 제주목사나 상찬계원들은 이 거사를 지방 행정체계를 전복하기 위한 변란 또는 조선왕조를 부정하고 別國을 세우기 위한 반란으로 규정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했지만, 그 실상은 향전 또는 민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상찬계시말』에서도 “제주성을 공격하여 관리들을 죽인다는 설은 모두 상찬계가 빚은 부정

37) 民亂(民擾)이란 향촌사회에 뿌리를 두고 그 속에서 생산 활동을 하며 생활하던 사람들이 국가권력에 의한 부세수탈이나 수령과 이서배의 수탈에 대항하여 通文을 돌리거나 呈訴를 거쳐 봉기하는 것을 말한다. 봉기지역이 고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투쟁의 목적도 탐관오리의 규탄이나 부세수취의 부당성에 대한 경제투쟁의 차원에 머무른다. 주로 향회에 의해 주도되고, 군현 단위의 향권을 장악하거나 중앙정부의 회유가 있으면 곧 진정된다. 1862년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제주에서까지 발발하였던 임술민란이 대표적이다. 한편 變亂(兵亂)은 향촌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훈장·의원·지관 등을 생업으로 하던 저항적 지식인 집단이 鄭鑑錄을 비롯한 이단사상을 무기로 하여, 빈민이나 유랑민 등을 동원해서 무장을 갖추고 투쟁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원된 민인들을 병기로 무장시키고, 직접 관아를 공격한다. 참여층이 특정 고을의 단위를 벗어나 고을 간 연대세력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전복을 기도하는 움직임이다. 稱兵騷亂·賊變·逆謀 등으로 불리는 정치투쟁이다. 영조 때의 戊申亂(李麟佐의 난), 1801년 洪景來의 난, 고종 때의 李弼濟의 난 등이 대표적이다(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0; 배항섭, 『조선후기의 민중운동』,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8). 또한 鄉戰은 종래 향권을 장악해 왔던 사족(유립)과 수령권을 배경으로 한 향품(향족)과의 대립 혹은 향품 간의 대립을 말한다. 18·19세기에는 향리·향암·교임을 둘러싼 싸움이 일반적인 향전의 모습이었다(고석규, 앞의 책).

과 비리 때문”이라고 하여, 상찬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변란으로까지 확대 해석된 것에 대해 부정하여 놓았다.

이재수 찰리사가 내린 명령 내용에도 이러한 상찬계의 폐단은 지적되었고, 처음에는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 옥사 이후 상찬계원들은 모두 머리와 몸을 숨기고 앞뒤로 두려워하며 지냈다. 4~5년 사이에 백성들은 관리들의 꼴을 거의 보지 않게 되어 약간 편안하게 되었다.<sup>38)</sup>

그러나 찰리사의 힘으로도 상찬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재수는 김익강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상찬계의 폐단을 전해 듣고, “제주의 읍내에 상찬계가 있게 되면 그 읍은 반드시 망하게 되므로 내가 당연히 분쇄시키겠다.”고 하였다. 이에 該事의 서리에게 명하여 근본 원인에 대해 염문하게 하였다. 그러자 都執事 洪汝直이 서리에게 “천리 異域에서 염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某坊에 가서 某甲을 찾아서 그 원인을 묻고, 某徒에 가서 某乙을 방문하여 그 곡절을 묻고, 수십 곳을 기록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홍여직은 상찬계 조직의 사람이고 갑이나 을은 모두 상찬계의 심복들이어서, 염문한다는 것은 모두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므로 끝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찰리사가 그 이유를 알아서 홍여직을 쫓아내고 高遇泰를 도집사로 삼았다. 고우태는 청렴 강직한 사람이었고 근본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나, 양제해의 옥사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특이하게 하지 못했다. 홍여직이 뒤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로 지시하였으므로 찰리사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결국 상찬계는 타파할 수 없었다.

상찬계 조직은 조선후기 제주도 향리·향임층의 동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찬계는 19세기 초 향리

38) 「相贊契始末」, 梁濟海傳.

직임뿐만 아니라 주요 향임직을 장악하였던 실질적인 제주도 향권의 주도세력이었다. 이들은 제주목사 등 지방관과 밀착되어 향권을 독점하여 나갔다. 이재수 찰리사의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권의 항배에는 하등 변화가 없을 정도였다.

상찬계와 같은 이권 조직은 다른 지방에도 존재했다. 18세기 이후 다른 지방에서도 士族들이 향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향리들이 작칭 형태의 契 조직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었고, 향안에 상대되는 壇案을 만들어 三公兄을 선발하는 기준을 세워 향리에 대한 포폄과 승진 등을 관장하기도 했다.<sup>39)</sup> 그러나 제주지역의 상찬계는 향리뿐만 아니라 좌수·천총 등 향임직, 군관직도 다수 포괄하고 있었다. 계원의 수가 3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향리·향임층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다. 상찬계는 조선후기 양반사족층이 미약했던 제주도의 사정에 기인하는 특수한 형태의 향리·향임 결합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양제해 모변에서 보듯이,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향전은 다른 지방의 전형적인 사족양반층(舊鄕)과 향임층(新鄕) 간의 대립과는 달랐다. 오히려 제주도의 향전은 세력이 가장 많은 향리층 내부의 대립이나, 향리·향임층이 복합된 싸움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숙종대(18세기 초)에 李衡祥이 제주목사로 재임하기 전부터 대정현에서 假吏들 간에 10년 가까이 싸움을 치렀는데, 이 대립 과정에 鄕所의 品官·儒生·武士로부터 鄕吏·官奴·寺奴·私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향리·향임층이 함께 가담하였다.<sup>40)</sup> 양제해 모변에서도 양제해·김익강 등 향임층이

3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4(조선 후기의 사회), 1995, 102쪽.

40) 李衡祥, 『耽羅狀啓抄』, 제15계. 이 장계문을 보면, 假吏라 하는 것은 “매번 備邊司에 올려 보내어 關文을 받아 가지고 오는 아전을 말한다. 이름을 감추고 신분을 없애어, 혹 寺奴라고 칭하거나 혹 牧子라고 칭한다.”라고 하였다. 假吏는 원래 향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를 보충하고 있던 官奴들을 말했는데, 가리를 매개로 향리층으로

전면에 나섰지만, 軍器書員 高成太, 吏校 梁時彦, 金旗牌, 金哨官 등 향리층이 다수 가담하였다.

19세기 후반 이후 1862년 임술민란, 1898년 ‘방성칠란’, 1901년 ‘이재수란’ 등 주요 민란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이들 민란의 배후에서도 어김없이 제주도 향리·향임층 내부의 향권 지배를 둘러싼 상호 대립과 갈등이 재연되었다. 따라서 1813년 양제해 모변은 조선후기 제주사회 정치·사회 세력의 구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이강회가 김익강을 만나서 『상찬계시말』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상찬계의 조직 경위 및 弊廢의 내용, 상찬계를 둘러싼 향진의 전개 양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상찬계시말』은 양제해 모변에서 주모자 혐의를 받아 흑산도 유배형에 처해진 김익강으로부터 이강회가 그 전말을 들어서 작성한 글이다. 이 자료는 정부측 문서에는 확인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우선 상찬계가 행한 각종 폐단이 사건의 중요 원인을 적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양제해의 신상, 거사 추진 과정, 告變의 실상, 양제해에 대한 평가 등이 기록되었는데, 양제해의 죽음을 상찬계가 저지른 의도적인 타살로 보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을 상찬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순수한 等訴 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도

---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리는 기존 향리층과 대립하여 상호 알력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석규, 앞의 책, 151~153쪽).

철·김재검·김상빈 등 관찬 자료에 보이지 않는 인물 관련 사실이 기록되었는데, 특히 김재검은 상찬계의 핵심 인물로서 양제해의 거사를 반란으로 조작했음을 폭로했다는 점이다.

상찬계는 1790년경에 제주도의 鎭撫吏·鄉吏·假吏 등三班 吏屬 300명을 결속하여 만든 이권 조직으로서, 양제해의 거사 계획이 있기 직전에 가장 세력이 강력했다. 세금 징수, 상거래, 관직 임명 등에 개입하여 뇌물을 챙기는 등 제주목사와 결탁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다. 결국 양제해 등의 거사는 변란·반란보다는 민란 또는 향전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향리층이 주도하던 조선후기 제주도 향권의 동향을 엿볼 수 있고, 향전 또한 다른 지방과는 달리 향리층 내부의 대립이나 향리·향임층 내부의 복합적인 싸움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19세기 제주지역 향리·향임층의 동향, 향권을 둘러싼 싸움 등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앞으로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또한 1862년 제주 임술민란으로부터 1901년 ‘이재수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민중운동의 배후에 있던 향리·향임층 내부의 움직임에 구체적인 개별 사건들과 연계시켜 해명하는 작업도 필요함을 느꼈다. 이들 의 문점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자료

- 『耽羅職方說』, 『相贊契始末』,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牧民心書』  
『耽羅狀啓抄』  
『耽羅紀年』

### 2. 저서 및 논문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0.  
權奇重, 『19세기 濟州 鄉吏層의 戶口 變動 -大靜縣 東城里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57,  
權仁赫,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李元淳教授華甲記念 史學論叢』, 1986  
權仁赫,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7, 1988.  
김경옥,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담을 통해 본 선박건조술』, 『역사민속학』 24, 2007.  
金東栓, 『朝鮮後期 濟州 大靜縣 鄉吏層의 身分變動』, 『史學志』 28, 1995.  
金奉鉉, 『濟州島流人傳』, 國書刊行會, 1981,  
배향섭, 『조선후기의 민중운동』,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8.  
吳洙彰,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 一潮閣, 2002  
李成姪, 『19세기 제주 大靜縣 邑治 거주민의 혼인양상 -『大靜縣衙中日記』와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57, 2007.  
林熒澤, 『丁若鏞의 康津 流配時의 教育활동과 그 성과』, 『韓國漢文學研究』 21,

1998.

林煥澤, 「茶山學團에서 海洋으로 學知의 열림 -李綱會의 경우」, 『大東文化研究』 56, 2006.

조성윤,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 구조」,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27, 1991.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부자 이야기 : 김만일 집안과 산마감독관」, 『제주도사연구』 10, 2001.



## Abstract

## Yangjehae Mobyeon(梁濟海 謀變) and Sangchangye(相贊契)

Park, Chan-Sik\*

This paper focused to reappraise Yangjehae Mobyeon(梁濟海 謀變)'s real condition through new historical material(相贊契始末). Kimikgang(金益剛) stated truth involved with Yangjehae Mobyeon(梁濟海 謀變) at place of exile-Heuksan island, and this historical material(相贊契始末) is writing that recorded it. This historical material contains important truths that is not in government recording.

First, importance cause of this incident was due to each kind vice that Sangchangye(相贊契)-local government employee organization enforced.

Second, this historical material saw that Yangjehae(梁濟海) was killed intentionally by Sangchangye(相贊契).

Third, this historical material evaluated this incident on complaint movement to correct abuse of Sangchangye(相贊契).

Fourth, persons done not look in government recording such as Idocheol(李道喆) · Kimjaegeom(金載儉) · Kimsangbin(金相彬) were recorded to this historical material. Specially, Gimjaegeom warped this incident to rebellion as point person of Sangchangye(相贊契).

Sangchangye(相贊契) was organization for rights and privileges which collected Chejudo's 300 local government employee in 1790. Sangchangye(相贊契) intervened tax levy, commerce action, government

---

\* Research Professor of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Cheju National University

office appointment and spoiled every injustice and irrationality.

Finally, this incident is not rebellion but should be realized to popular uprising or local struggle(鄉戰).

**Key Words**

Yangjehae Mobyeon(梁濟海 謀變), Kimikgang(金益剛), Kimjaegeom(金載儉), Sangchangye(相贊契), Sangchangye circumstances(相贊契始末), local struggle(鄉戰), rebellion, Hyangri(鄉吏), Hyangim(鄉任)

**교신 : 박찬식** 690-121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718-3 원신아파트 102-705  
(E-mail : cheju4843@hanmail.net 전화 : 010-2693-0880)

최종 투고일 : 2008. 8. 12

최종 접수일 : 2008. 8. 18